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00
----------	-------

발의연월일 : 2026. 1. 23.

발 의 자 : 박충권 · 박준태 · 김위상
김 건 · 김기웅 · 김성원
이인선 · 유상범 · 이달희
권영진 · 박정하 · 이상휘
박정훈 · 신성범 · 최형두
최수진 · 김장겸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연구개발과제 등을 3년 이내 1천만원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한 사람을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결격사유는 연구개발과제의 단순 참여자까지 결격대상에 포함하여 원자력안전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원자력안전규제 연구나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비영리 목적의 연구·사업까지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오히려 전문성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위원의 결격사유 기준을 원자력사업자의 허가 관련된 연구개

발사업 등을 2년 이내 총 2억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경우로 하고, 결격대상을 총괄 책임자로 한정함으로써 위원의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3년 이내에”를 “2년 이내에 해당 기관의 허가와 관련된”으로, “1천만원”을 “2억원”으로, “용역을 수탁하여”를 “용역(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은 제외한다)을 수탁하여 총괄 책임자로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명·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 4. (생 략) 5.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최근 <u>3년 이내</u> 에 연구개발과제(「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등 총 <u>1천만원</u> 이상의 <u>용역을 수탁하여</u>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제10조(결격사유)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u>2년 이내</u> 에 <u>해당</u> <u>기관의 허가</u> 와 <u>관련된</u> ----- ----- ----- ----- <u>2억원</u> ----- <u>용역(교육 ·</u> <u>홍보 · 토론회 · 세미나 · 공청</u> <u>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u> <u>한 강의 · 강연 · 기고 등은 제</u> <u>외한다)</u> 을 수탁하여 총괄 책 <u>임자로서</u>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